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12분)

○소위원장 박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초실장 김기남입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7권입니다.

페이지는 35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와 같이 주의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4년도에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서 지연이 되었지만 현재는 협의를 마치고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일단 결론도 결론이지만 왜 5년이나 지연되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23년도까지 건립 목표였습니다. 다만 중간설계 이후에 지하암반이 발견되고 그사이에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예측지 못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은평구 불광동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전액 이월이지요, 25년? 그러니까 24년 예산 37억 전액 불용됐잖아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25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25년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결과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의 연번 8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연계를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의 주의와 제도개선 중 유형을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견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42쪽, 연번 10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이한 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및 자의적 예산 조정 집행 금지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내역사업은 동일한 세목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하고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 내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예산편성 내역을 준수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국회하고 재정 당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국회 의결과 달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아이돌봄수당이 늘어나고 아이돌보미가 늘어난 만큼 사실 운영비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같은 내내역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산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5년에도 운영비는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걸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런 것 할 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죄송합니다. 아이돌보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 예산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운영비는 그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한 게 아이돌보미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추후에 소송에서도 저희가 패소해서 4대보험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발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조정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23년도에도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상당히 많은 시정요구를 국회로부터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거의 유사한 예산집행을 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내역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미집행분을 다른 데에서 갖다 쓰신 거예요.

솔직하게 여쭙볼게요. 이것 예산을 짤 때 이 예산 구조가 비현실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수요 등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예산 짤 때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저희가 돌보미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돌봄수당은 적극적으로 책정을 했고 운영비는 사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것만큼 반영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4대보험이라든지, 돌보미들이 소송에서 이기면서 광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 법정경비로 한 43억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워낙 여유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라 하셨는데 꼼꼼하게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짤 때 예산의 구조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통으로 넓혀 버리든지, 그래서 유연성을 드리든지 아니면 돌봄수당을 아예 줄이고 돌보미와 운영비용을 늘리든지 이래서 실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인 거예요. 예산을 짤 때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이 유연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칸막이가 심해서 계속 이런 게 발생한다.

돌봄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바고 예산도 계속 늘고 있지요, 이것?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계, 시정요구, 주의를 계속 받아 나가고 있다는 건 지금 뭔가 어딘가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정을 하면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추징, 회수, 원상복구는 아니라고 치면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일 텐데 뭐를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을 지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지자체 의견 수렴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건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상임위와 일치시키되 사업 추진 방식, 새로운 개선 방식을 2026년 예산안 전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저희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26년 사업에 이걸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해하셨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 전제하에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것 저는 없애는 것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개선안을 26년 국회 예산 검토 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수정 제안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하고 문구는 지금 조정훈 위원님 얘기하신 문구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끝났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여성가족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기재부가 하나 의견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주 간단한 문구 수정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8번이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광역지자체 2개소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 요구사항에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라는 다섯 글자만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종면 위원 단계적으로. 대상이 전국인 것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것’ 이렇게 해야지 문법에 맞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여성가족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기획조정실장 최지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84쪽의 연번 1번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시면 이성권 위원께서 주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관련해서 이월액이 발생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실 요구자료 불성실 제출과 관련해서 경위를 설명드리자면요 매년 국가배상금 지원 예산이 실제 지급해야 되는 액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와 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재배정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계잉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실무자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차관님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가면 주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을 한다는 건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 누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개선 하면 무슨 제도를 개선하실 겁니까?

그냥 직원의 단순 누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그건 경미한, 부당한 사실…… 국회하고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 이거는 정확하게 주의인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매년 지연손해금이 이렇게 청구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가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이 매우 적다, 그래서 예비비와 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매년 국가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적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매년 예측하기 힘든 이유요 국가배상금 중의 상당 부분이 과거사 사건, 예컨대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선감학원 사건 등 과거에 이루어졌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약 70~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한 법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1심 사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예산 책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의견

을 개선하고자 합니다만 이게 재판 선고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내지는 과거사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미 국가배상금이 나간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나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예측이 가능하고 전례에 집행된 액수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연손해금이 나갈 정도로, 그것도 이거 다 모아 두면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그거는 편성 시기에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나 이런 데서 당겨 쓰면 되더라는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꼼꼼히 보니 조금 이거는 어이가 없네요. 이게 지금 판결이 돼서 일주일 이내에 지급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손해금이 발생한 게, 24년 저희 검토한 예산에 137억 원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안 내도 되는 비용을 137억. 그런데 이거는 예산 운용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 137억 원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거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정상적인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법무부차관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예산을 적정 수준보다 많이 책정했을 때 불용을 시키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너무 적게 책정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월액 최소화 방안 및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달아 주시고요, 26년 예산심사를 하실 때 26년 예산심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주의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결산과 좀 맞게?

전문위원님, 어떠신가요?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신중히 응하라’ 이게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보던 것들하고 안 맞아요. 이게 결산인데……

○**소위원장 박형수** 신중한 작성을 통해 결산심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조정훈 위원** 주의니까…… 법무부는—국회의원이라기보다—국회의 자료 요구가 부정확하거나 누락하지 않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주의니까 그 정도 하면 어떨까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려고 하는 취지가 단순히 개별 의원님한테 자료 요구를 잘못했다 이 부분이 중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방금 임미애 위원님하고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시정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과 또 달라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2번도 살리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거는 위엿것이고 밑엿것.

○이소영 위원 두 개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밑엿것은 내용이 틀려요. 답변을 잘못했다라는 취지거든.

○이소영 위원 위엿것은 제도개선으로 두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회하고 예정처에 신중한……

○노종면 위원 자료 앞에 결산자료라고……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는 국회의 결산자료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작성을 통해 제출할 것. 신중한 작성……

○김성희 위원 신중하게 작성해 제출할 것.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에 ISDS 항소심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가 투자분쟁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산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국가배상금입니다.

○노종면 위원 우리가 그걸 한동훈 장관 시절에 안 받아들이기로 해서 배상금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기되고 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조정 결과에서 만약 이 지연손해금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면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거는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나요? 이미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중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배상금액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요?

○조정훈 위원 항소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ISDS 사건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요……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되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8쪽, 연번 5번입니다.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2쪽, 연번 9번입니다. 형사보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된 점을 존중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4쪽, 연번 11번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일부 교도소 공무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임위 주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의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다른 것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예.

○**김대식 위원** 차관님, 부산교도소하고 지금 제 지역구인 사상구의 부산구치소 이것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김대식 위원** 과밀수용은 과밀수용인데 이게 현재 50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도 지금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굉장히 노후화돼서 인권침해 소지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요. 부산을 방문해서 지금 직접 보시고 구치소와 교도소 그다음에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신임 장관님한테도 특별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차관님께서 한번,

장관님이야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지만 일은 또 차관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도 부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런 발언은 제한해야 되겠는데……

○**김대식 위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진행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8쪽, 연번 3번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탄력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피해구조금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제외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구조금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 범위에서 환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공제 요건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상해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구조금 종류나 금액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 구상권 행사의 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철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적한 위원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지적한 이유는 뭐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부처에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명하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드려서 이 지적사항을 철회해 주셨고요. 다만 다른 위원님 두 분, 김 위상 위원님과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지금 물리적 시간 한계상 저희가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보류하고 법무부에서 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11쪽, 연번 1번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수요조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제처차장 김창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2쪽, 연번 2번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인력 중복 투입에 따른 사업추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제처차장 김창범** 시정요구는 수용하나 문안 수정을 희망합니다.

참고로 시정요구를 하신 천하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변경서를 저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용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그냥 말해 보세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여기서 얘기할까요?

○**조정훈 위원** 예.

○**법제처차장 김창범** 법제처는 문안을 소프트웨어 용역 수행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인력 중복 투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기발생 인력 중복 투입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말씀하신 문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그대로 시정이지요?

○**법제처차장 김창범** 예.

○**김대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법제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23쪽, 연번 12번입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시정요구사항의 종류를 징계에서 시정 또는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4년 6월 SAI20 감사원장회의는 22년 8월 출범 이후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성명서 채택 등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보다는 시정 또는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G20 감사원장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국내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옮겨서 가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아니요. 당초 국외여비를 사용했는데 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에 국외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성희 위원 연말에 뭘 가는 데 부족하셨던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다른 국제회의 가는 데……

○김성희 위원 그 다른이 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시아 감사원장회의라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행

사가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쭙보는 이유는 매년 가야 되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보통 감사원장님이 해외에 나가는 일정 정도 같으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짰을 텐데 예산이 갑자기 모자랐던 이유가 궁금한 거지요. 아니면 연말에 필요 없는 걸 가신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2024년도에 SAI20라는 행사가 G20 국가의 감사원장회의인데 첫 출범하는 공식 출범식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1년 이상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편성이 좀 안 된 측면이 있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편성이 안 된 측면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건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줘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보는 겁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관계에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희 위원** 불가피하다고 하시면 지금 감사원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신중하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미 지금도 신중하게 편성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때만 더 많이 가서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한 감사원 입장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사실 이것은, 감사원장께서 출장을 갈 때 한 것은 전용은 아니고 국외여비 항목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갔고.

전용에 대한 부분은 몇 달 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사실은 좀 별개의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나름대로 내부통제, 저희 예산집행심의회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가 규정을 위반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말씀을 좀, 같은 말은 압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24년 6월 12일부터 간 G20 감사원장회의는 갑자기 가게 된 거지요, 계획이 없다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2024년에 계획했습니다. 5월 달에 계획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5월에 계획했으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산요구안에 안 들어갔던 거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그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반영 안 된 것을 알고도 간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건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국가 시스템 상 반영이 안 됐으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법무부도 그 당

시에 편성된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요구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걸로, 이걸 돈 줄 수 없다는 걸로 정리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읽어 보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처음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국외여비 예산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런 예산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아마 기재부에서도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가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사실은 국제협력이라는 하나의 사업 안에 있는 하나의 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 사업이 아니고……

○**노종면 위원** 자, 오케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예산안 범위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해야지요.

연말에 갔다고 했는데 아시아 뭐라고 했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ASOSAI 회의가 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거 언제 갔나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게 저희가 전용을 한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9월 달에 ASOSAI 이사회가 있고 또 INTOSAI 워킹그룹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거는 언제 가셨어요? 그 2건 가셨나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9월에 갔습니다.

○**노종면 위원** 9월에 2건. 그러니까 9월에 갈 때는 돈이 이미, 원래 편성이 안 된 행사가 너무 중요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판단해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쓰고 나니까 다른 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셨어야지요. 아니면 전용을, 그러니까 돈을 쓰는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정계에 이를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이,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노종면 위원** 감사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가를 지금 따져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G20 감사원장회의에 대한 중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됐던 건데 그걸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굳이 갔어요. 여기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썼어요, 제대로.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다 썼으니까 다음 걸 안 썼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수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노종면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정훈 위원님 먼저.

○**조정훈 위원** 지금 이제 자리를 바꿔 앉으셨는데…… G20 감사원장회의 그리고 아까

INTOSAI 회의 등은 저도 회계사 경력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감사원장이 G20 감사원장회의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G20 회의 가는 건데.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요구를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신 거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 정도는 나쁜 것도 아닌데 G20 감사원장회의 가는 거를 어떻게 날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원장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G20 감사원장회의인데, G20 국가의 감사원장들이 나가서 그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처음 신청한 게 2024회계연도고요 2025회계연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기재부에서 이걸 중요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반영이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기재부 혼내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역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 가신 내용들이 소위 해외 외유성 출장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 조정을 하신 건데, 두 번째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주장처럼 전용하는 내용과 방식이 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규정 내에서 전용하신 겁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거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감정상 이렇게 했다, 특히 민감할 수 있는 해외출장비를 이렇게 당겨 썼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게 징계 사항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이 아닌데, 위법이라 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 대상도 굉장히 반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김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내가 기재부를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른데 2024년 6월 12일부터 G20 감사원장회의는……

출범식 행사라면서요. 갑자기 잡혔다면서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SAI20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공식적인 출범을 하는 게 202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예산은 기재부에 요구를 하는 게 2023년 5월입니다. 그때 요구를 할 때……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예산을 대폭 깎을 때 그때 다 빠졌는가?

○**노종면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편성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앞에 위원님들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징계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감사원에 여쭙볼게요.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다른 정부기관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마도 상임위에서 이례적으로 징계 요구를 해 온 상황인데 상임위의 징계 요구의 취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산안을 정부가 수립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아서 부처가, 기관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최대한 그 예산을 허락받은 목적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감사원이 다른 부처에 항상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기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게 어떤 규정을 위반했냐 아니냐, 단순히 위법이나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 스스로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기관들한테 더 적절하게 써라, 목적에 부합하게 써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감사원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저는 상임위의 징계 요구 취지는 그런 것이라고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상임위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상임위 의결 과정도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5쪽입니다. 연번 1번 성과지표 총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감사활동 성과에 대한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보시면 첫 번째는 제도개선, 두 번째는 시정인데 감사원은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김성희·정진욱 위원님께서도 시정 요구를 하셨는데 그 문안이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어서 하나로 문안을 합치면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친 문안을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줄에 ‘성파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를 개발하고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세부내역별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감사활동의 성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면 시정 의견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상임위의 제도개선, 부처 의견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문구 수정도 동의하십니까?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7쪽입니다.

연번 3번 감사활동경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제도 관련 홍보비 초과 집행 지양하고 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절차의 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박희승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정요구 문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상임위 문안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보다는 상임위 시정요구 문안으로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뭐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36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검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부적정 지적사항인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와 국회 심의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수처 예산 전용하셨는데 아까도 예산 전용 때문에 좀 얘기했는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1억 전용하셨어요. 차장님, 이것은 허용된 전용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재부 동의하신 거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기재부 동의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47쪽입니다.

147쪽, 연번 1번입니다. 본부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거고 또 본문에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는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희망하고 만일 제

도개선이 받아들여지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47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에 ‘연례적 집행문란’ 이런 용어를 쓰나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구를……

○소위원장 박형수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그 부분은 좀……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한테 물어봐야지.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집행문란이라는 것 이게 쓰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이 무슨 용어를 쓰든 본인의 자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수정문구를 좀 한번 불러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일단 먼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고 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면 그다음에 문구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훈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직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데 돈이 부족해서 딴 데서 갖다 썼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외교육여비 부족 발생 사유가 매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외교육여비 부족분을 다른 데서 세목 조정하는 게 지난 3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조정훈 위원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22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예산의 집행이 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연수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는 당연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다음 연도도 일단 조금 부족한 상태로 계속 운용이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짤 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몇 명 보낸다, 어느 나라로 보낸다, 기간 얼마다, 그건 대충 딱 떨어지게 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실제로 소요분은 반영했는데 일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부를……

○조정훈 위원 사람을 늘렸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경비가 일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립외교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경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25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또……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25년에는 그래서 미리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미 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다 개선 조치된 사항이고 해서 좀 제도개선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법 위반사항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법 위반사항 아니고 이건 세목 조정이라서 부처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말씀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문구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연례적 세목 조정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이게 수정 문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연례적 집행문란으로’ 이걸 빼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시정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뺀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교육여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존중하고 ‘헌법재판소는 국외교육여비의 전용을 지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게 문제가 지금 국외교육여비를 계속 탄 데서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 보다가, 사실 헌법재판소 시정요구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란 건데요, 아까 제가 읽던 거예요.

헌법연구관……

○소위원장 박형수 몇 페이지?

○임미애 위원 1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연구관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명인데요. 거기 보면 24년도에 일반직공무원이 전체 26명인데 그중에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이 23명이에요.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26명 중에 23명이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하다면 정상 업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맞나요, 이 자료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실제로 휴직을 한 사람이 26명이라는 이야기고요.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직을 한 사람이 26명이고……

○소위원장 박형수 아, 휴직한 사람 26명 중에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23명이다 이 뜻이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것을 잘못 썼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문구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일반직공무원 총 26명이 아니고

휴직한 사람 26명 중에 6개월 이상이 23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6개월 이상이 돼야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직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총정원은 한 350명 그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문구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문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고치시든지 지적인 위원이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대영** 상임위 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임미애 위원**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계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62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의 과도한 이·전용을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와 동일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이게 기재부 규정 안에서의 이·전용입니까, 금액 규모가? 기재부 관계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기재부에게 제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승인 협의를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답니다.

○**조정훈 위원**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궁금한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인건비 외 특정사업 예산의 과도한 승인 이용을 지양해야 함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는, 이 특정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뭔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특정사업이 뭐냐고요?

○**김성희 위원** 그냥 실무자가 답을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안정웅** 안정웅 사무관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부족으로 다른 비목에서 승인 전용 후에 인건비 잔액이 일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또다시 전용된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당겨 왔다가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다시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안정웅** 예, 연말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임미애 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에 특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안정웅** 작년 인건비 부족의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임미애 위원** 24년도 특정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안정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4쪽, 연번 3번입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와 동일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16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징계가 있는데 부처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 시정 중 상임위와 동일한 시정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참고로 한말씀드리자면 징계 의견을 주셨던 허성무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9월 2일 자로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상임위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내용이 같은가요? 다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바꿔 달라는 취지시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체를 시정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이라면 하나로 합쳐서 시정할 수 있지만 항목이 다르면 그 항목에 대한 것의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정이고 세 번째 시정이니까 두 번째만 시정으로 바꾸면 다 시정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를 시정으로 바꿔 달라고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그대로 시정으로 부처가 받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징계를 시정으로……

○이소영 위원 두 번째가 첫 번째 거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사실상?

○조정훈 위원 3개가 다 똑같아요, 실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삭제하고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으로.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위반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인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어긴 거네요, 규정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일선 법원에 제대로 집행하라고 주의사항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요, 올해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첫 번째 걸로 하나로만 해도 될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 예비심사 결과 지적 후에도 동일한 예산집행을 반복했다, 이 내용은 빠져도 되는 내용인가요?

○조정훈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국회 예비심사 결과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당했는

데 또 한 겹니까, 허성무 위원의 지적처럼?

○전문위원 정대영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주의’ 시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의 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상습범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담당자 한 명이 이 집행지침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관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쓰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게 지금 83건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해당 부분이 이전에 23년도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84건의 그런 위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알고 나서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 각급 법원에 안내 메일을 드렸고 또 25년 8월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행정처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 9월 15일 날제가, 기조실장이 회계 책임자들을 다 소집해서 교육을 직접 하도록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관계자 여러분, 만약에 25년 예산을 내년에 우리가 결산 심의할 텐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징계로 수용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예, 수용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록에 남깁니다, 이것.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대법원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이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절대’지요? 기록으로 남깁니다, 절대 없는 걸로.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그냥 두고 두 번째 것만 시정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냥 살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문구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당연히 바뀌어야지. ‘시정 조치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진행……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대법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입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초실장 이양성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76쪽입니다.

176쪽의 연번 2번입니다.

사무처의 입법정보화 사업과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의 중복지급 사업비 회수 및 사업추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 지적은 아까 법제처에서 있었던 천하람 위원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요청했고 어제 6개월 제한으로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 산출물이 완전히 다 이행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업비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신 천하람 의원실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 결과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바꾸고 문안도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은 국회 소속기관 간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의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용역업체의 사업 수행 인력 타 사업 중복투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조정하는 데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정요구 유형과 그 문안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의원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다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협의를 다 했고요. 의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어떻게 한 사업자에게 10개 사업을 몰아주고 국회사무처, 도서관, 법제처,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이걸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우리 국회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 인력 투입률이 380%라는 건 한 사람이 자기 하루 일의 거의 네 배에 가까운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는 이걸 대체를 하든지 못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업자에게 10개의 사업을 몰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0개 사업 다 더하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저희가 다른 부처 사업의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국회 부처, 사무처·국회도서관 사업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입법정보시스템 구축하는, DB 구축하는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3억 6300이 고요. 도서관의 경우에도 3억 한 6200 정도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 다 경쟁입찰했는데 이 사업자가 뽑힌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제도개선은 안 되는 거잖아요.

민간업자가 작성하고 여기저기다 집어넣는 걸 사무처에서 모니터링할 힘은 없으신 거 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그래서 국회 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중복 투입 이 안 되도록……

○**김성희 위원**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하고 사무처하고 얘기하는 정도겠단인 거 고 그 외의 다른 부처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국회사무처가 마련할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해야 될 문제인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국회사무처·도 서관·법제처·과기부·문체부·중기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법제처·과기부·문체부 는 다 부처에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으로 수용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정을 수용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임미애 위원** 아까 112쪽의 천하람 위원 법제처에 지적한 것도 시정으로 처리했습니 다. 이것도 시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납품이 됐으니까 돈은 다 줘야 돼서 그것 시정해 갖고 돈 돌려 주는 건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쉽게 말하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법률적 검토를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주의로 말씀을 드린 건 다른 부처하고 달리 직접적으로 의원실 요청에 따 라서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6개월 제한을 받은 상황을 감안해서 의원실에서도 이 정도면 주의 정도로 양해를 한 걸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요청하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주의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를 하고, 문구도 국회 측에서 얘기한 문구대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 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관계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인사팀장 안동광** 대통령비서실 총무인사팀장 안동광입니다.

○**김대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김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참모들,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됩니다. 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번 결산심사소위에 불참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결위 결산소위는 각 부처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예산집행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예산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17년 만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아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면 당연히 나가라고 지시를 하셨을 거예요. 안살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빠진 채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나도 대통령을 모셔 봤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대통령실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지금 현재 누구시라 했어요? 류덕현…… 뭘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재정기획보좌관하고 총무비서관의 업무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사실은 예결위에서 공지한 대로 차관급 인사인 재정기획보좌관이 참석하도록 저는 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참석한 것입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과 관련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재정기획보좌관은 국가 전체 예산, 특히 국가기구에 대한, 대통령실도 역시 국가기구기 때문에 그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잖아요. 그럴수록 결산심사 자리에 나와야지. 그래서 고의로 피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

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책임을 좀 방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본 위원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직접 결산심사에 임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재정기획보좌관이라고 그러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소위원장 박형수 재정기획보좌관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국가예산과 재정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국가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면 행정부의 모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재정기획보좌관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네요? 대통령실 예산을 관장하는 것이 재정기획보좌관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꼭 그런 건 아니고 더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혼자서만 나와 갖고 다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기획보좌관의 임무 거기에 대통령실 예산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임무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산과 결산의……

○소위원장 박형수 지출할 때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 파악하는 거라면 비서실장님도 다 파악하고 있을 테고, 실제로 이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결재를 하는 담당자가 지금 나와서 결산을 하는 자리거든요.

지금 재정기획보좌관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지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소영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소영 위원 확인을 좀……

○소위원장 박형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서 의사진행발언 겸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예결위 전문위원 계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대통령비서실 같은 경우에 결산심사에 누가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규

정이나 어떤 기준, 내부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내부지침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규정은 따로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차관급이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류덕현 보좌관님, 재정기획보좌관이 이번 정부에 올해 신설된 직급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급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차관급입니다.

○이소영 위원 총무비서관도 차관급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아닙니다. 1급 비서관급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문체부는 문체부차관님이 나오시고 또 행안부는 행안부차관님이 나오시는데 문체부 예산을 내부 살람하는 건 사실 그 차관님은 아니지요. 아마 거기에도 총무팀이 있고 총무팀장이 있을 건데요. 차관급이 나오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또 부처의 입장을, 그게 어떤 징계를 수용할지 감사를 수용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답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급이 나오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을.

그런데 대통령실에 원래 이런 사안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책이 별도로 없었던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번에 이제 신설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총무인사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이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징계든 감사든 시정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를 조금 더 높은 직급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자 오늘 출석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180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님, 이것 대통령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없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든 시정이든 요구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 하면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우주항공청이니 뭐니 다른 일부 부처들이 아무 안건이 없어서 인사만 하고 간 것처럼 사실 대통령비서실도 지금 여야 위원을 통틀어서 아무도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부처에 상응하게 차관급이 출석하신 상황에서 누가 참석하는 게 옳냐 그르냐 이걸 길게 얘기하는 건 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지 보좌관은 한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국회의 사정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지금 차관급이니 1급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의 1급 총무비서관은 1급이지만 차관급 이상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7년 동안에 항상 총무비서관이, 법은…… 차관이 나오냐 1급이 나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17년 동안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논쟁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총무비서관이 바쁘니까? 국회에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법을 따지기 전에 국회의 관례가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김현지 비서관이 잘 아니까 오늘 같은 날 와서 설명을 하고 가는 것도, 인사하고 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자, 다른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도 그냥 기록에만 남길게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새로 임명된 재정기획보좌관님께서 본인이 차관이라 더 높은 직급이다 이것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정기획보좌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대통령비서실 예산도 꼼꼼하게 관리하라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기재부가 너무 역량이 크니까 이것 나눠 가지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소위 얘기해서 국정 철학이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기획 기능과 재정 기능도 분리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지 대통령비서실 안방 살림하라고 만든 직책은 아니지요? 지금 임명되실 때 대통령비서실 안방 살림할 거라고 수용하셨어요, 그거? 그건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넓은 의미에서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안방 살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관이든 장관급이든 내용에 맞지 않는 분이 오셨다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나오실 겁니까, 결산 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씀대로 참석 대상을 정해서 나올 걸 계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백번 양보해서 국회 무시다 여기까지는 오늘은 안 갈게요, 왜냐하면 논의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기획보좌관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비서실 안방 살림하는 데까지 나오라고 하니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안 나오는가 보니까, 너무 실세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오해를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좀 이거는 기록에 남겨 둡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자, 이 부분은 회의 진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기획보좌관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심사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넘어가자 이견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심사에도 누가 출석하실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가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난 이후에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심사할 분량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안에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 대통령경호처부터 합시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정책관으로 있는 박관천입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강병인** 기획관리실장 강병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81쪽입니다.

181쪽, 연번 1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 불용을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먼저 그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즉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이었는데 이게 발생한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세종로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예전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어떠한 훈련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수영장이나 교육장 그다음에 사격장 등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막상 시설을 받고 보니 실은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수영장을 사용하게 되면 약 8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수영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도저히 수영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용했던 수영장은 연무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구조 활동이나 이런 어떠한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미군들이 쓰던 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불편하지만 예전의 떨어져 있는 연무관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상황

변화가 많습니다. 경호행사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외국 행사들도 중간에 막 끼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훈련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육훈련의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써야 되는데 절감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을 갖다가 예전에 활용했던 곳을 좀 원거리에 있지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돼 가지고 반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 상신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 기존에 우리가 불용해서 반납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빼고, 그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약 59% 정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게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너무 길게 설명하셔 갖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축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24년도 집행예산이잖아요?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요.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 당시 대통령실에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이번에 답변을 할 때는 위원님,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수립하게 된 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불용하게 된 경과 등은 충분히 행정적으로는 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소영 위원 부처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경호처정책관 박관천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설명하신 정성을 생각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끝인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84쪽입니다.

184쪽, 연번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직책수행경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수용 의견입니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견이 없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수용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 수용 의견이세요?

○김성희 위원 아니, 고민정 위원하고 허성무 위원 찾아가서 철회해 달라고 설득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첫 번째 항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희 위원 183이에요?

○김대식 위원 184쪽이라며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184쪽 이 사안은 직책수행경비 건이 전 부처 공통 사항이라서 시정요구를 하신 두 위원님께서 철회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삭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고민정 위원하고 허성무 위원으로부터 철회 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삭제.

○이소영 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전문위원은 이 삭제 의견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통사항 심사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훈 위원 오후에?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시간이…… 이것 공통을 어떻게 다 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대통령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재개
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 안으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 시간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나눠 보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오늘 이 결산심사에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심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예산심사 때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재정기획보좌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다음 예산소위 때는 국회 예결위에서 만약에 참
석 대상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때 소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회에서 누가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는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간사 협의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통
보를 하면 총무비서관 나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재정기획보좌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부처별 심사를 할 때 공통심사 사항 보류해 놓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회의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할 것인지, 원래는 다른 관계자들 이해관계도 다 고려한다면 정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각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뭘니까, 앞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지난번……

○전문위원 정대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할 게 공통요구사항에 있는데, 192페이지 보시면 감사요구안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고, 그다음 논의를 보류하신 게 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건이 하나 있었고 펀드사업 단계별 집행 문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에 위반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논의하시면 되는데 감사요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괄 보고하고 감사원에서 일괄 답변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오늘 이것은 결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늘 결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논의하시고 간사 협의체로 넘기시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우리 논의를 중단했던 게 몇 건이었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건 3건입니다.

○김대식 위원 3건, 그것만 하고 가면 안 되겠어요?

○김성희 위원 그런데 기재부 감사 요구 이런 것은 논쟁이 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대식 위원 그것은 오늘 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겨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조정훈 위원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적으로……

○전문위원 정대영 이것은 논의를 하시는데 여차피 감사요구안 자체를 오늘 의결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논의하신 다음에 이 자체를 간사 협의체로 넘기셔서 가지고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오늘은 들어만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혹시 이걸 논의를 하다가 또 길게 논의가 되거나 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해서, 그래서 이석해야 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석하시고 남아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별 심사에 이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부대의견은 별도로 논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상임위와 김재원 위원이 한국방송정책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공연 기획 및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상임위, 김재원 위원께서 한국방송정책원에 대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관련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김성희 위원, 안도걸 위원, 임미애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년간 역대 최고 수준 세수결손 발생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도걸 위원, 임미애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세수결손 대응 시 국고손실 초래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김용만 위원께서 국가보훈부에 대해 독립기념관장의 권한 남용 및 직무유리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윤후덕 위원께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R&D 예산 편성 부처에 대해 2024년 R&D 예산 삭감 및 그에 따른 피해현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박형수 위원, 조정훈 위원께서 기획재정부 등 국고보조금 편성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감사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7개 감사요구사안 중에서 국가보훈부 대상 독립기념관장 권한 남용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용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나머지 6개 감사요구사안……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소영 위원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권한 남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6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첫째, KTV 공연기획 및 추진 건의 경우 소관 부처인 문화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확인 후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KTV 민간인 고소 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등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재부 대상 세수결손 2건의 감사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이미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의 주요 주제로 선정해서 8월 25일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으므로 본 감사를 통해 세수추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R&D 예산 삭감 건의 경우 과기부가 진상조사TF를 통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조사 결과 확인 후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상태로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므로 기재부 실태조사 후 감사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국회 때 국회 감사요구사안이 1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의 10건은 이미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렸고 아직도 7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5번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의 권한 남용. ‘개인적 인맥, 종교 활동을 이유로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김대식 위원 관장이 자기 시설에, 시설 사용하는 것까지 관장이 책임지나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감사요구 사유니까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그리고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단체에서, 광복회 등에서 국민감사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 실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유물 수장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한적인가요?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일반 관람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유물 수장고 관람을 특정 집단에 허용하는 등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음’. 그러면 특정 집단이면 어디 집단인지, 종교 집단인지 뭘 집단인지 이게 뭔가?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이것도 감사요구 사유에 보면 일반 관람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여

기 감사요구, 김용만 위원이 제시한 거는 신반포교회·종교교회 신도 이런 분들한테만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유물 수장고 이런 게 국보급이나 이런 게 되나? 원형을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가?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독립기념관 내 수장고 및 강당 이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 보거나 그런 건 아닌 사항입니다.

○**이소영 위원** 5번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이거 구체적으로 좀 사유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JTBC 포함해 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된 사안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감사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에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서 대관료를 받거나 대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배 공간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ROTC 동기 행사, 지인들 예배 모임 이런 데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그건 안 되지.

○**이소영 위원**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예전에 사실 22년에 국립광주과학관장이 개인 심부름을 직원에게 시켜서 해임되고 또 법원에서도 해임 정당하다 인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정쟁의 문제거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문제가 돼야 되는 사안인 거고.

유물 수장고라는 데도 진짜 진품, 정말 진짜 유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반 관람객들은 안 되는 건데,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 지인분들에게 여기를 보여 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광복회에서 이 감사요청서를 보훈부에 제출을 했고 보훈부도 나름대로는 기초사실관계 정도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광복회에서 받은.

그래서 저는 사실 독립기념관이라는 데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예전에 만들 때 성금 모아서 만든, 국민들 돈으로 만든 시설이고 그 운영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ROTC 동기 모임, 지인들 예배 모임 이런 거를 여기에서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시설을 사유화한 걸로 봐야 돼서……

저는 이거는 담당 부처인 보훈부에서도 감사를 동의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수용하는 의견이시고. 이 정도는 우리 결산소위에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국민감사 요구가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만약에 감사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것과 별개로 또 국회에서도 감사 요구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결정되면 아마 같은 한 과에서 감사를 수행하되 2개 감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확인하고, 광복회에서 요구한 것은 광복회에서 요구한 대로 확인을 해서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부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한 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국민감사 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저희가 감사 결과를 보내 주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다음에 아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감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부처에서 진행 중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감사 사안 내용이랑 부처의 감사관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먼저 부처에서 확인을 한 후에 그게 충실히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하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마무리하고 넘어가나요, 건별로?

○소위원장 박형수 건별로 일단 의견을 들어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감사 요구는 예년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보류해 놓고 한꺼번에 나중에 같이 결정하는 사례가 많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신 다음에, 전체를 보류하신 다음에 간사 협의체에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 요구를 통째로 다요?

○임미애 위원 이거 전체를 다 보류 넘어가냐고요.

○이소영 위원 전체를 다 보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서 정하셔도 되는데 활동계획안을 보시면 저희가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시정요구하고 똑같이……

○이소영 위원 결정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김형석 관장에 대한 감사는 기관에서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요.

저는 연번 3번과 4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그리고 25년도에도 세수결손이 10조 이상이 발생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 전체 질의 때 감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저희가 지금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할 때 그걸 감사사항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관련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감사와 동시에, 저는 기관에 대한 이 건과 관련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세수 착오, 그로 인한 결손 이 문제에 대한 담당자의 징계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기관에 대한 감사 조치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의 징계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지방이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지방채를 공자기금에서 수용해 준 지자체는 오히려 수도권이었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의 지방채는 공자기금에서 수용한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미반납과 관련해서도 제가 더 세계 얘기하지 못한 건 지방 살림이 어떠했는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경북 같은 경우에 산불재난 발생하고 나서 국가가 지원금을 내려보내도 매칭할 여력이 없어서 국비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기관에 대한 감사 수준이 아니라 담당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5번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께서 예배 공간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진도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종교 특별전에 여기에서 종교별 예배, 미사, 법회를 개최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JTBC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더라도 이것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ROTC 15기 회장단 방문, 합창단 독립군가 공연 관람 이건 또 특혜와 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국가 자산 사유화를 했다 이것은 좀 침소봉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자료 보세요.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임미애 위원 한번 보여 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걸 사유화했다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소위원장 박형수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분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TC 15기 동기 모임을 구두 지시에 따라서 대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와 관련한 것도 독립기념관 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2개의 교회가 몇 월 며칠날 와서 예배를 했는지도 날짜가 특정돼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고 제보도 있고 또 본인도 이 사실 자체, 예를 들면 이 모임이 개최됐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7건을 다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7건 중에 비교적 명확하

게 부처와 감사원이 둘 다 수용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관련해서는, 결산소위가 또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수결손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일기예보가 틀리듯이 예측했는데 그걸 잘 못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개년간, 올해 세입경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3년간 100조 정도의 세입결손인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내려가야 될 교부금이 원래는 '100만큼 줄게'라고 해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다 예산을 100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중앙정부 세입이 핑크가 나니까 내려가는 예산을 확 줄였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까지도 다 취소하거나 연기되거나 하면서 또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나 피해받은 국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국고 자체의 재정 손실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세입이 핑크가 나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금여유재원 2.7조 원을 끌어다가 썼는데 이로 인해서 이 하나의 기금이 향후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만 연간 26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국고의 입장에서, 국가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기금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만 수백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일 거고요.

그래서 결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이번에 우리가 틀렸으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3번, 4번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미반납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입장에서 여러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을 진전을 시켜 봤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미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지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이거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저희 회의 중에 언급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각 부처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상환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부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할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집계하고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기회에 통합관리지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기재부 또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 또는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부처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침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거를 덜컥 특정 부처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은 좀 정확한 진단이나 해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7번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이소영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ROTC 15기가 단체 관람했다, ROTC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고, 종교 그거 하는데 지금 보니까 특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다 그래요. 천주교 광주대교구, 불교 각원사,

봉은사 서울 이런 부분이 전체가 지금 다 있는데 관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 기독교에만 이것을 했다 이걸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수장고는 지금 안에 뭐가, 어떤 작품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보면 기증자의 요청에 의해 수장고를 방문했다. 기증자가 이것은 한번 봐도 좋다, 내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봐도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감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그 정도 의견들 말씀하시고.

그러면 잠깐만.

감사원에 여쭙볼게요.

지금 세수결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세수 초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사원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22년도에 세수추계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세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건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 자체적으로?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재부2차관 얘기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7건의 감사 청구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 관련 사항이 4건이나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처리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재부도 감사원이 제기해 주신 처리 방향에 대해서 100% 입장을 같이합니다. 이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수결손하고 세수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세수결손이 24년에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초래가 된 게 사실이고 또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8월 25일부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시에 24년의 세수결손과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개인을 징계할 문제냐의 여부하고 관련해서는, 개인을 징계하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고의나 중과실이 수반되었을 때 개인을 징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세수결손은 기본적으로 당초 세입예산 추계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도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민생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매긴달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게 주요 요인으로 현재

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개인의 징계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국세가 줄어로 해서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급작스럽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또한 어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있었다, 이것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영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국고보조금의 미반납,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국고보조금법과 시행령에 보면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돌리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로잡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하고 관련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자료 19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98페이지 봐 주시면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 ‘기획재정부는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미반납액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과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면 이 문구로는 조금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간사님이 제기해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가 매핑이 잘 안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핑하고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행안부가 협조하라’라고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제도나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여기에 같이 명시해 주시면 방금 소위에서 의견 주신 대로 기재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구를 읽어 봐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이 감사원 감사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의견 제시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7번에 관해서 지난 3일 동안 수십 개의 부처들을 봤는데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 미납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숫자도 우리가 받아 보았고요. 또 기재부와 행안부 등등 관계 부처에서도 도대체 어떤 지자체가 얼마를 미납했고 미납의 이유가 무엇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깔끔하고 에러 없는, 실수 없는 시스템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여기까지는 맞지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저는 차관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서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몇 가지는 꼭 짚어야 되겠다는 게, 이렇게 미납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가지고 지자체와 중앙관서장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장에게 돌리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돌릴까요? 이걸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과 지침이고 이것을 실행하고 시행하고 옮기는 것은 기재부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특히 행안부와 함께 전체 기재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핑이라고 하셨을까요,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조율이 잘 안 됐다. 이 또한 변명이지요.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국고보조금과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쓰는 두 부처인데 이렇게 집행만 하고 미반납액이 다수가 그리고 상당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납 사례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걸 굉장히 과책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몇몇 부처에서, 행안부였나요 해수부였나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꽤 집중해서 또 2018년인가요 2019년부터 장기간으로 교부금을 미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걸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7년, 8년이 됐는데 어떻게 단순 실수가 있었습니까? 이걸 저는 과책 사유가 중대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행안부 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중앙 부처에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 잔액이 얼마이고 어떤 지자체에서 얼마씩을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지자체, 특히 그 기간이 길고 그리고 미납금이 상당한 지자체,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개 정도는 집중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왜 이 특정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반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과연 추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감사 안 하면 뭐 감사합니까?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감사원은 행정부의 예산지출의 통제와 감독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행정업무와 재정운용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칠팔 년 전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자만 쳐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감사 안 하면 도대체 뭘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기재부와 행안부가 만든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미납이 심각하고 상습적인 몇 개의 지자체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저희도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범위와 대상

사업이나 기관, 자치단체를 좀 좁혀서 특정을 해 주시면……

○조정훈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7번 보조금 미반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감사를 특정해 주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기재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렇게 특정이 되면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기재부에다가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봐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런 것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이후에 아까 전반적으로 기재부차관이 얘기하신 수준에서 시스템 보완하고 시정요구하는 정도로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수결손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대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되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점차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2년에서 3년에 나누어서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이건 법령도 위반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기재부 말고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차관 얘기하시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거는 저는 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무조건 단계적으로 해라, 첫해는 하지 마라, 법문의 취지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 정도 들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감사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징계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하고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건이나 고발 요건이나 이런 게 맞으면, 맞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고 또 부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류를 해 봤다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개별 사안마다 하나씩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 좋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수결손으로 인한 결과의 중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세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초과된 것의 원인이 뭔가를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된 것이 재정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왜 초과됐는지를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그때 급증을 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까지 사실은 다 감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가 이렇게 중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단편적으로 주장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지금 이견이 있고 해서 이것도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과 또 부처 의견도 좀 더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요구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기관장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사실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설부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쭉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감사원 감사 요구든 또는 기재부 실태 점검이든 어느 한쪽의 결론을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아까 기재부차관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 얘기하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특정해 주면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일단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소영 간사님도 그렇고 조정훈 위원님도 지난번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부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6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따로……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 겁니다. 1번도 제가 얘기를 안 했고 2번도 얘기를 안 했고 6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 종합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류해 놓고 다시 검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보류는 보류인데 감사원에서 5번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아까 수용 의견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훈부에서 감사요구서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감사요구 요청사항을 접수를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초적 사실관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광복회가 보훈부에 제출했고 보훈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수용하신 입장에서는, 저나 김대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보고 기사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수용 입장을 정리해서 오셨으면 그 수용 의견의 전제가 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소위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기사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수용이라고 해 놓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정리도 안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보류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 내지는 광복회의 감사 요청하는 분들이 제시한 자료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언론보도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광복회에서 제시한 것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물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관계까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알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 확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논의사항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이 부분은 좀 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한 걸로 하고.

펀드예산 단계별 출자 필요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모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시고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는 위에 보시면 금방 논의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인데 그 건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펀드 사업 단계별 집행 문제입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펀드 사업 단계별 집행 문제가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보시면 제도개선, 제도개선, 징계,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 유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정하실 게 뭐냐 하면 시정요구사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첫 번째 보시면 215페이지 산업자원부·특허청 거인데요 특허청 것 할 때 잠정적으로 제도개선으로 보류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을 했었는데 국토부 할 때 다시 보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하시되 그 내용은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땡땡부는 펀드출자사업의 집행 시 기조성된 펀드의 실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얘기하는 게 특허청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문위원 정대영 5개 전체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체 다를 그렇게 하자고?

○김대식 위원 ‘땡땡부는’ 했으니까 전체 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일단 논의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논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특허청은 지난번에 보류했다 그랬어요, 의결했다 그랬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의결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걸 의결했다고, 그때?

○전문위원 정대영 예, 제도개선으로 의결했었는데 국토부가 와서 특허청은 의결했는데 우리는 왜 보류하나 해서 전체가 다 보류된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을 특허청도 다시 보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었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번안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지금 일단 논의를 해 보고 그것과 다른,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또는 이것 전체를 보류한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그것은 얘기를 합시다. 일단 펀드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펀드자금을 집행해야 되는지 여부가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97페이지에는 이번에 안건으로 누군가가 문제제기한 5건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펀드가 이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펀드라고 하는 게 자금이 투자되고 나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재량적으로 유동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5분의 1씩 해서 5개년 나누어서 낸다거나 이게 적합할지 아니면 전체를 받아서 큰 투자 대상이 발견됐을 때 일찍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게 펀드마다 특성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이 5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라라고 했는데 개별 펀드의 특성하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5개가 아닌 그 외의 다른 펀드들하고는 또 출자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우리 눈에 띈 5개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할 거냐 한꺼번에 할 거냐를 결정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룰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제도개선을 요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그 전에 기재부2차관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펀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전문위원이 하시든 기재부2차관이 하시든 일단 자펀드를 결성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것을 죽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제로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국가에서 모태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출자하는 펀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 돈하고 한국벤처투자라고 현재 지금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보태서 모펀드를 만듭니다. 모펀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자펀드라 그래 가지고 모펀드 자금 일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자펀드를 만듭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펀드가 예산에 반영돼서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논란은 두 가지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냐. ‘모펀드가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야 자펀드 구성이 빨리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기로 한 돈을 일시에 다 쏴서 모펀드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액티브하게 운용이 되는 것은 자펀드가 만들어진 뒤에 운용이 되니 빨리 자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펀드에 주기로 한 돈을 일시에 다 주자’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반대되는 다른 주장은 뭐냐. ‘모펀드가 빨리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일시에 다 줘야 맞는 거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모펀드가, 정부가 만약에 모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했고 한국벤처투자가 자금을 보태 가지고 200억짜리 모펀드를 만들기로 했으면 정부가 그해에 100억 원을 다 준다 그러면 한국벤처투자에서도 100억 원을 같이 출자해서 모펀드가 200억이 만들어져야 이게 실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모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썼어요.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벤처투자가 100억을 다 매칭을 못 해서 200억짜리 모펀드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러면 실집행은 덜 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개를 확인해 보니 100억을 줘서 200억짜리 모펀드가 다 구성이 돼서 실집행까지 다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어떤 사례는 정부에서는 100억을 넣었는데 벤처투자에서는 100억을 못 대 가지고 정부에서 집행은 됐는데 모펀드를 구성하기 위한 실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집행을 고려해서 출자 규모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이 문구가 구성이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계적으로 출자해라 이 말도 맞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원타임에 정부가 주기로 한 것은 다 줘라 이 말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집행을 등을 고려해서 출자 규모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한 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펀드에 100억을 썼다, 100억을 준 것은 확실하게 준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벤처투자에서 그것을 매칭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러면 그다음까지 매칭이 되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그다음까지 매칭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정부를 믿고 보증을 하는 거고 매칭 펀드는 미리 모을 수는 없는 겁니까, 벤처투자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자펀드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펀드로 내려갈 경우 정부에서는 무조건 100억이 온다, 그러니까 벤처투자에서 100억을 모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보증을 가지고.

○**조정훈 위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이게 실은, 제가 한국말을 생각하려고…… 제가 옛날 인생을 살 때 국제금융기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제기구에서, 세계은행이나…… 4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되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속만 하고?

○**조정훈 위원** 예, 그것을 영어로 콜러블 커미트먼트(callable commitment)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국가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500억을 주겠다고 약속함, 이것을 갖고 국제기구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디스벌스먼트(disbursement), 돈을 낼 때가 되면 그 국가에 전화해 가지고 돈을 당깁니다. 여기서도 사고가 1도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국가가 모태펀드 100억을 출자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펀드가 만들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그것도 없이 반드시 이 모태펀드에 싸 줄 것을 약속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돈을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싸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속(commitment)은 콜러블, 수시상환 권한이 있는, 콜러블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이걸 해소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펀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비효율성은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정확한 날짜를 맞추는 그것은 어떤 도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잔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까지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신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정부에서 온다는 것은 확고하잖아요. 이것은 부도날 염려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삼자가 듣기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조정훈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재무부장관들 해 가지고 얼마를 약속했다라고 한다고 그다음 날 돈을 입금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 가지고 다 콜러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국가에 전화해서 3개월 안에 다 줍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제 저희가 외교부 할 때 심사 대상에도 어음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국내에서 이런 펀드 자금을 만드는 것에 동일하게 딱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 해에 언제 이것을 콜

을 하느냐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이것을 예컨대 1년에 100억이 아니라 5년에 20억씩으로 단계적 편성을 하기는 특성상 좀 어려운 거고 예산편성은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자금 운용은 최소한의 이자라도 나는 그 펀드에 넣고 굴리다가 기재부가 특정 부처에서 이제 자펀드도 만들어졌으니 이 돈을 달라 그러면 바로 싸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하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콜이 와서 2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80억이 남았다고 하면 분명히 결산 과정에서는 또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임미애 위원** 이게 또 어떤 산업에 대한지의 펀드냐도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계 쪽에서도 이런 펀드가 있는데 사실 약간의 좀 특성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단계적으로 출자해라 내지는 일괄 출자해라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펀드 사업의 단계별 집행 관련이라고 문건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혁신펀드의 경우 4년간 나누어 투자됨에도 출자 예산을 한 해에 전부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전문위원 정대영** 제가 설명을 잠시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작년 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단 게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은 ‘정부는 각종 펀드 출자사업의 연말 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 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 출자사업 및 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 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 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게 작년 우리 국회가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의 사업 설명자료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치 완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조치 중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펀드마다 성격이나 또 조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나눠서 해라, 일괄로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만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출발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처럼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다 찾아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단계적으로 매년 출자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만 한꺼번에 몇 년 치를 다 투자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낭비고.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시장에서 매칭을 하는 과정에 있

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가 혁신펀드를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모태펀드, 그러니까 모펀드가 확실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제로 자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는 계좌에 돈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자펀드가 안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전액을 계좌에 다 쏘 줘야 그다음에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의 잔고가 지금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지 이것 4분의 1로 나뉘라, 2분의 1로 나뉘라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소위원장 박형수 그 펀드가 결성될 때 어떤 성격의 펀드고 어떻게 조달한다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운용하면 되는 거지.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공감대는 일률적으로 단계적 투자, 일괄 투자 이렇게 정하는 표현은 쓰지 말자는 거는 공감된 것 같고 다만 박형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구를 기재부가 제안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쪽 의견 주신 거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첫째에 다 해라’ 이것도 안 맞고 ‘무조건 단계적으로 해라’ 이것도 안 맞고 국토부나 중기부에 해당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주어가 ‘국토교통부는’ 이것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니고 ‘정부는’이 주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향후 펀드 출자에 있어서 실투자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면 똑같이 100억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1년 안에 모펀드가 다 구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100억 원을 출자하는 거고요, 이거는 도저히 100억을 받아서 200억짜리 펀드가 1년 안에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70억·30억 그런 식으로 배분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를 한 거는 건별로 다 했거든요. 건별로 해서 특허청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혁신펀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 이렇게 다 건별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정사항을 줘야 되지 정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시정사항을 주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 그렇게 가려면 부대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소영 위원 이거는 삭제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논의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미반납 그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모아 가서 저희가 하게 되면 부대의견에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조항도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다 단계별 출자예요. 단계별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라가 모두 다 시정요구사항이에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 문건의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

의견도 있거든요.

○**조정훈 위원** 이거는 형평성을 맞춰야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이 정계 의견은 결산 부대의견을 계속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지난번에 그렇게 달아 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 부대의견이 그때는 그러면 여기에만 달려 있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아니, 그 부대의견은…… 이거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기부에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과기부가 시정을 안 하니까 그 관련자를 징계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은 정부 전체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체에 대한 부대의견?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보류해 주셔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제안은 그 문구에 하나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도적 개선안, 그냥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아까…… 콜러블한 정책들 쓰는 나라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모태펀드에 대한 총액을 한 계좌에, 국고에 모아 놓고 이것을 최소한 관리해 나가면서 모태펀드가 완성되고 자펀드가 완성될 때마다 돈을 싸 주는, 디스벌스(disburse)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실제로 민간에서는 캐피털콜이라고 해서 투자 건이 되면 모태가 나오고 민간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요, 기본값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게……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확정적으로 이것을 약속을 할 거냐, 이것을 그러면 예산 숫자가 아니면 국고채무부담행위로라도 명시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야 민간에서 믿을 거냐, 그러면 그런 약속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우발채무에 해당하지요. 완전채무가 아니고 우발채무의 영역으로 넣어서 이 예산만큼을 잡아 두고 이 예산만큼을 독립된 계좌에 넣어 두고 이것의 사용은 A, B, C, D 목적에서만 집행하고 집행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한다. 그래서 이 충분한 예산이 특정 계좌…… 그러니까 에스스로같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제도개선이라는 단어만 넣어 두면 논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도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 지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안의 특수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 안 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건입니다. 제가 나눠 드린 게 있는데……

2회 이상 교부 위반한 게 1건 있고 또 1건은 2항입니다. 17조 2항을 위반한 연내 집행가능성 위반이 있는데 여기 표를 죽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놨습니다.

2회 이상 교부한 동그라미를 죽 보시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가능성 위반을 보시면 연내 집행가능성 위반은 거의 다 위반한 거고요. 2회 이상 교부는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을 합친 것 시정요구사항 하나 있고 2항만 위반했을 때의 시정요구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항에 대해서 다 어긋났을 때는……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 문구가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모두 위반한 사항에서는 ‘00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2항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00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먼저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제 제안은, 개인적 제안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들어 보시고……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2회 이상 교부 위반은 이것은 빼박이지 않습니까?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주의까지는 다 일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연내 집행가능성 위반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입안자의 주관적·정책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회 이상 교부한 부처는 다 주의 그다음에 연내 2회 이상은 했는데, 2회로 나뉘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다 집행 못 한 것은 제도개선으로 제안을 드리고. 다만 이 문구 시정요구사항의 1번에 저는 이의가 없고, 2번에 결국은 두 번의 위반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나갈 때 나머지 돈을 줄 만큼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잘 집행되냐 이 판단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 판단을 의무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서나 자료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00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가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의 판단 평가를 의무화하고 집행할 것’ 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구를 잘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왜냐하면 두 번째……

○**소위원장 박형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 예를 들면 여기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썼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예를 들면 보 사업이나 농수로나, 특히 농어촌공사 쪽의 사업의 경우는 다수가 농번기가 끝난 10월 이후 혹은 11월 달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내 집행이 아니라 11월, 12월, 내년 1월 이 정도 내지는 동한기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 2월 정도 되면 공사가 가능하도록 일부러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의무화시키지 마시고 약간의,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하면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사항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산림청 사업은 주로 겨울에 많이 하는 사업들이어서요 이것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교육부 사업도 방학 때 집행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임미애 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래서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래요. 그러시다.

○이소영 위원 ‘철저히’라기보다 예외를 조금 더 고려하려면 ‘충분히’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는 또 집행가능성이 없는데 배정을 하면 또 혼나잖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런 사유를 검토해서 판단을 하면……

○전문위원 정대영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보 사업 이런 것은 성격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다음 해 예산에 넣었어야지요.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에 넣었어야지, 이례적으로 집행을 못 하는데도 예산을 넣는다는 게 1년식 예산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허용해요?

○전문위원 정대영 위원님, 가끔씩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금 배정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하여튼 돈을 다 쓴다는 확정은 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돈의 집행이나 사업은 1, 2, 3, 4, 5, 6 주 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2월까지 어떤 계약도 못 하는 예산을 넣어 둔다? 그것을 어떻게 국회가 권장할 수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계약은 돼 있지. 계약은 돼 있는데 실제 공사를 안 하니까 자금 집행을 못 하는 거지.

○이소영 위원 공정률에 따라서 보통 지급을 하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계약 자체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을 사업의 특성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계약을 해야만이 이월이 되거든요. 계약을 안 하면 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충분히’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된……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 말을 아주 우습게 아시네.

여기 보면 행안부에 징계가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의하고 제도개선만 있으면 주의·제도 이렇게 하는데 징계가 하나, 이 사안이 뭐였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행안부 자료입니다.

행안부 연번 14번인데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자에게 징계처분할 것’ 이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조정훈 위원님 것이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게 보조금이에요? 이것 보조금 아니에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인데 ‘징계할 것’ 이렇게 돼 있다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회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걸 철회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2회 교부 위반은 주의, 연내 집행가능성 위반은 제도 개선 그렇게 정리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 됐습니까, 이제?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공통사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종전에 의결했던 부처별 결산 중 번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소위에서 농식품부, 산림청,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보훈부, 교육부, 통일부, 행안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결산에 대해 의결하였으나 공통사항 심사 시 제기된 국고보조금 교부행위 부적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1개 부처에 대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결산심사에 전념하시고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등 아직 심사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제부터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머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위원님, 국민의힘의 김대식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했고,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소영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활동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 신치환 감사원 사무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정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신 보좌관분들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분들 그리고 속기사분과 경위분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은 후에 위원님들께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대식 김성회 노종면 박형수 이소영 임미애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정대영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기획관리실장 강병인

감사원

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기획조정관 이형석

법제처

차장 김창범

기획조정관 최영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하정수